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현대바이오랜드라 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BIOLAND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원료제조 및 판매
2. 생물공학을 이용한 환경산업 관련 장비 및 제반 기술의 제조 및 판매업(유해성 평가용 DNA Chip 및 측정장비등)
3. 생명공학 관련 제품제조 및 판매업 (진단 DNA Chip 및 인공 장기등)
4. 생체에 대한 유효성 및 유해(독)성 평가 대행업
5. 식물 유전자 공학을 통한 종자 생산 판매업
6. 농·축산 가공 및 판매업
7. 수출입업 (농·축산,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8.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건강식품,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
9. 임가공업
10.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11. 세포치료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의 연구, 제조, 판매업
12. 부동산 임대업
13. 국내외 구매 대행업
14. 위 각 항의 관련 사업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의 본점은 충북 청주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yundaibioland.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만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단,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의 2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1종)은 무의결권 배당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 이라 한다)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보통 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 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 증자나 주식배당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2종)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라.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1)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 2) 특정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3)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4)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주식의 주가를 1월 이상 상회하는 경우

- ③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이상을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전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⑤ 전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유무상증자 시에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 시는 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 주식을 배정한다.
- ⑦ 전환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1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3종)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 이상을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유무상증자 시에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가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 시는 존속기한부 전환 주식에 대하여도 보통 주식을 배정한다.
- ⑥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⑧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1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5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4종)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 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가. 상환 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복리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 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해 야 한다.
 - 나.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상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1)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2)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라.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마.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바.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상환에 관한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④ 상환주식에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 이상을 배당하며, 구체적인 배당률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상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⑥ 상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⑦ 유무상증자 시에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 시는 상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 주식을 배정한다.
- ⑧ 상환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의6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제5종)은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고 제8조의3 및 제8조의5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종류주식(이하 “전환 상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기타 전환상환주식의 상환 및 전환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제8조의3 및 제8조의5에 의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8조의7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전환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6종)은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고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종류주식(이하 “(존속기한부) 전환상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기타 (존속기한부)전환상환 주식의 상환 및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8조의4 및 제8조의5에 의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삭제

제9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 1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542조의3 제3항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일전 3월간의 평균종가 이상으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 3 (주식소각)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1조 (명의 개서 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 개서 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 개서 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3조 (주주명부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주권의 불소지 제도) 삭제

제 3 장 사 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 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행사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 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의2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

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 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 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9조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

- ① 회사는 5인 이하의 사내이사와 5인 이하의 사외이사를 두며, 필요시 기타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단, 사외이사의 수와 비율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에 본 정관 제38조 의2에 의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① 이사의 선임은 관련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한 주주 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정관 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회사는 이사 선임 시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1조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결에 의해 선임된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대표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이사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각각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일체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업무를 분장한다.
- ③ 각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34조의 1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의1항을 준용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⑦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⑨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6조 (감사위원회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37조의2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대행한다.

제37조의3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37조의2의 제2항에 따른다.
- 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 결의 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보상위원회
 - 4. 내부거래위원회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조직,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의3 내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3 (업무집행임원)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업무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임원을 선임시에 제33조 제②항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고 처우 및 임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0조의 1 (이사의 책임감경) 삭제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삭제

제42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와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 1 (외부 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35조, 제38조, 제40조의1, 제43조, 제45조의 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 2,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의 효력발생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주) 현대바이오랜드

대표이사 이 희 준